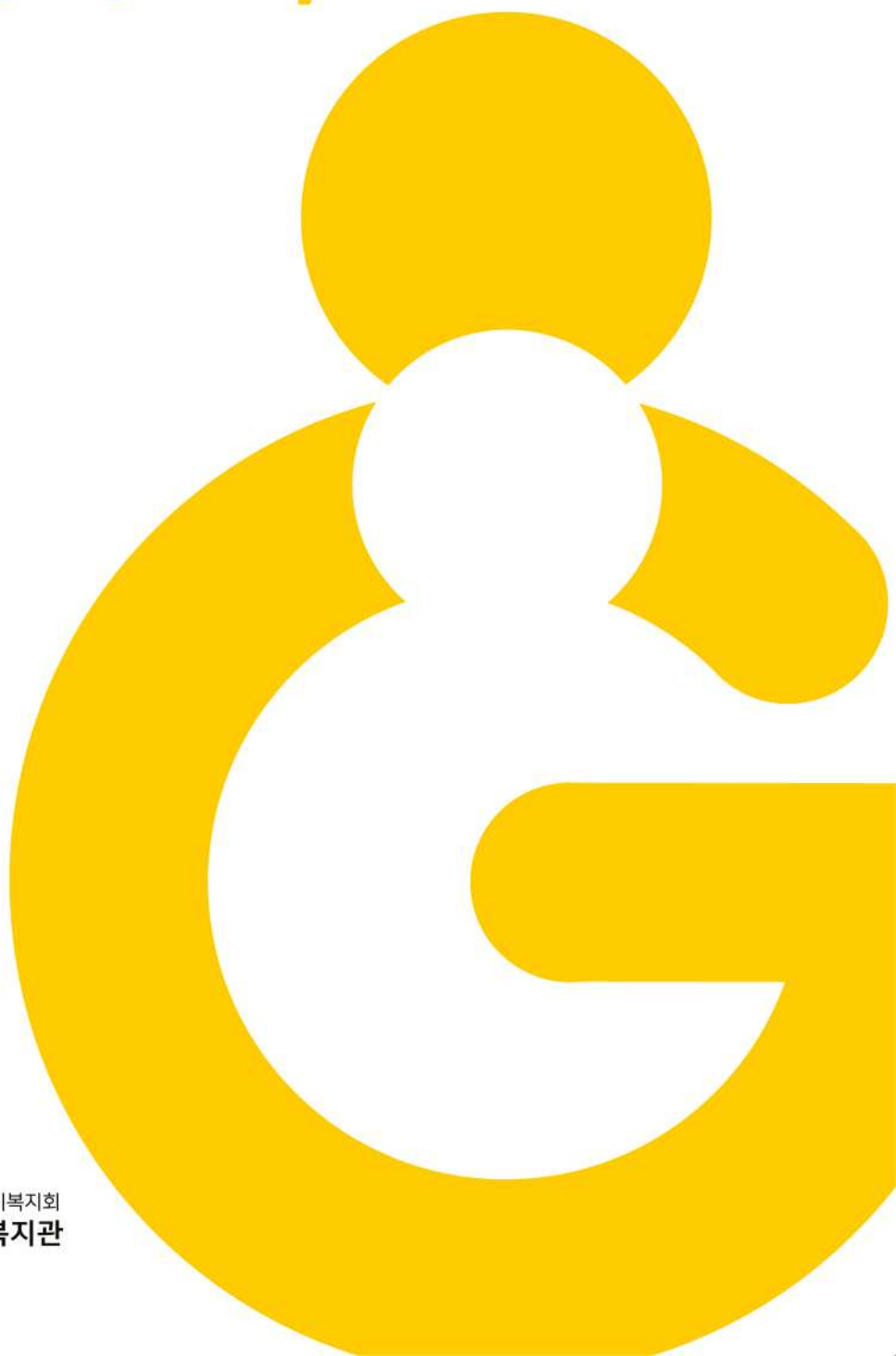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가이드북**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가이드북



이 책은 '2019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의  
복지정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강서뇌성마비복지관([www.grccp.or.kr](http://www.grccp.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속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얼마나 받을지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가이드북'은  
이러한 선택을 보다 쉽고 올바르게 결정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발간사

강서뇌성마비복지관은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뇌성마비장애인 전문복지관으로 뇌성마비장애인의 보편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뇌성마비장애아동과 청소년의 재활치료, 성인뇌성마비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 뇌성마비장애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 뇌성마비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장애인이 성장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의료지원,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지만, 뇌성마비장애 특성에 적합한 복지지원의 부족과 여러 곳에 혼재되어 있는 정보, 복잡한 이용절차들로 인해 자원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에서는 뇌성마비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이 정보를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복지가이드북을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가이드북」은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들이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복지증진과 정보접근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소통중심, 변화중심으로 성장하는 복지관'이라는 새로운 미션 아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복지관, 뇌성마비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관으로 더욱 발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마음으로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 각자가 맡은 전문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뇌성마비복지관장 **박세영**



본 가이드북은 뇌성마비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각 사업은 [생활지원, 주거지원, 양육·돌봄·교육지원, 건강지원, 취업지원, 시설안내]

총 6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내부 구성은 생애주기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해당사업의 문의처,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목차 | 가이드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 알려드립니다 / 달라지는 주요제도

#### 1장 뇌성마비 장애란?

- 18 뇌성마비의 정의
- 19 뇌성마비의 원인 및 증상
- 20 뇌성마비의 분류
- 23 뇌성마비의 치료
- 26 뇌성마비장애인과외의 상호작용 매뉴얼
- 29 뇌성마비장애에 대한 Q&A

#### 2장 뇌성마비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 1. 생활지원

- 35 생계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아동수당 / 장애인 등록신청 및 등록진단비 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꿈나래통장(서울시) / 희망키움통장(I, II) / 청년 희망키움통장 /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시) / 내일키움통장 / 중증장애인 이름통장(서울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47 위기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가족역량강화 지원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50 일상생활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사랑의 그린PC 보급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 성인 최중증 뇌성마비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 주요보조기기 관련제도 / 영역별 보조기기 안내



### 57 이동지원

장애인콜택시(서울시)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 59 법률지원

무료법률상담 / 마을변호사 / 마을세무사 / 법률홈닥터 / 법률구조제도

### 61 요금감면지원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  
양곡할인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 66 문화여가지원

통합문화이용권 / 스포츠강좌이용권 / 장애인 체육시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관광정보 안내

## 2. 주거지원

### 73 주택임대지원

임대주택 지원(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 /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주택분양·임대)

### 79 주거안정자금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 버팀목 대출 보증 /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전세자금 보증

### 82 주거환경개선지원

주거급여(맞춤형급여) /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지원 / 에너지바우처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 3. 양육·돌봄·교육지원

#### 87 임신·출산지원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요양비(출산비)지원 / 출산비용 지원

#### 91 돌봄지원

만 0~2세 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  
시간제 보육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 다함께 돌봄 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기저귀)구입비 지원사업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서비스 제공

#### 105 교육지원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 초등돌봄교실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통신비)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꿈사다리 장학제도)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고교학비 지원 / 급식비 지원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  
평생교육 바우처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장애인 정보화교육 /  
온라인 정보화 교육



#### 4. 건강지원

##### 116 의료비지원

국가건강검진제도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장애검사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제도 / 건강보험 산정특례 / 건강보험 차상위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  
의료급여 제도 /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128 건강관리지원

영양플러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친화 건강검진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 131 재활지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발달재활 서비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  
언어발달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보장구 급여 /

#### 5. 취업지원

##### 136 취업훈련·알선지원

취업성공패키지 / 내일배움카드제 / 자활근로 / 공공산림가꾸기 /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근로 지원인 지원 /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 145 창업지원

장애인 창업육성 /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 장애인 창업접점 지원사업

## 3장 시설안내

- 150 **이용시설**  
장애인복지관 / 보조기기센터 / 자립생활센터 / 주거복지센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156 **생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자립생활주택
- 160 **직업시설**  
근로사업장 / 보호작업장
- 162 **재활병원**  
재활병원 / 장애인치과
- 166 **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전담 어린이집 / 특수학교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 “알려드립니다!”



##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	170만 7,008	290만 6,528	376만 32	461만 3,536	546만 7,040	632만 544	717만 4,048	802만 7,552

\* 9인 이상 가구는 8인가구 중위소득에서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1만 2,102	87만 1,958	112만 8,010	138만 4,061	164만 112	189만 6,163	215만 2,214
의료급여 (중위소득40%)	68만 2,803	116만 2,611	150만 4,013	184만 5,414	218만 6,816	252만 8,218	286만 9,619
주거급여 (중위소득44%)	75만 1,084	127만 8,872	165만 4,414	202만 9,956	240만 5,498	278만 1,039	315만 6,580
교육급여 (중위소득50%)	85만 3,504	145만 3,264	188만 16	230만 6,768	273만 3,520	316만 0,272	358만 7,024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 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30만 6,768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 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 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4인 기준 239만 9,039원)

\* 본 책자에 표기된 '누리집'은 홈페이지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주요제도”



## 장애인 등록 및 심사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제도는 유지되며, 최소한의 장애상태 확인을 위해 장애정도에 대한 심사로 진행됩니다.

- 장애정도 구분을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 ○ 심사 변경 사항

	현행	개편
장애등급제 (단계적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장애 1~3급</li> <li>- 종합장애 4~6급</li> <li>- '등급 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li> <li>-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li> <li>- 장애정도 미해당</li> </ul>
서비스 재판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연금</li> <li>- 장애수당</li> <li>- 중증장애아동수당</li> <li>- 활동지원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연금</li> <li>- 장애수당</li> <li>- 중증장애아동수당</li> </ul>

### ○ 장애인등록증 발부 안내사항

새로운 장애인등록증 발부시점	⇒ 장애인등록증 발급일자가 '19.7.1일로 기재되는 시점 <small>*등록증 발급일자기 '19.7.1일 이후일 경우 새로운 장애인등록증 발급</small>
표기 변경	⇒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장애인	⇒ 기존카드 사용 가능, 장애정도 표기된 장애인등록증 발급 원할 시 새로운 장애인등록증 발급 진행(기존 카드 회수)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 및 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조사 우선적용 서비스 :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2019.7월부터)

## 맞춤형 상담 및 사례관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장애 1급~3급)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이 확대됩니다.

※ 지원 신청 연령(만6세 이상~65세 미만)은 동일

구분	현행		개편
신청자격	1~3급 장애인	⇒	등록장애인
조사방법	인정조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급여체계	기본급여(4등급) 추가급여(8종)	⇒	활동지원급여(16등급) 특별지원급여(3종)





# 1장. 뇌성마비장애란?

---

·뇌성마비의 정의	18
·뇌성마비의 원인 및 증상	19
·뇌성마비의 분류	20
·뇌성마비의 치료	23
·뇌성마비장애인과의 상호작용 매뉴얼	26
·뇌성마비장애에 대한 Q&A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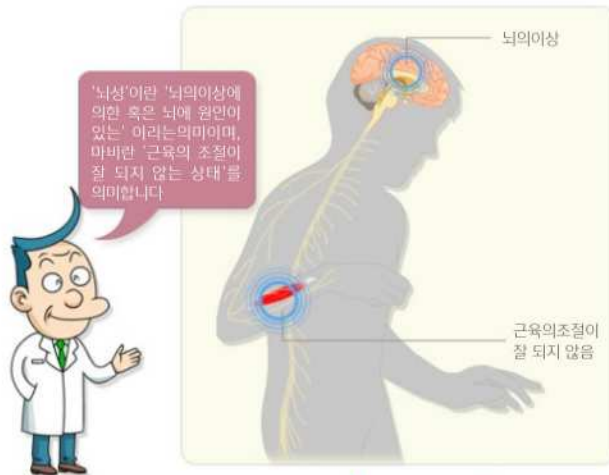


# 뇌성마비장애란?

## • 뇌성마비의 정의<sup>1)</sup>

### 뇌성마비란 무엇인가요?

- 뇌성마비(cerebral palsy, CP)는 출생 전·출생 중 또는 출생 후 생후 2년 이내에 일어나는 뇌손상에 의해 발생하여 어린 아이들에게 영구적인 운동장애를 남기는 비진행성 질환을 뜻하며, 이때 손상은 근육이나 척수에 연결된 신경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근육을 조절하는 뇌에서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 뇌의 병변, 혹은 손상은 진행하지 않지만 이로 인한 운동과 자세의 이상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 유형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 뇌손상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지적장애나 경련, 언어장애, 학습장애, 시력 및 청력 문제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 뇌성마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뇌성마비아동의 반 이상은 원인을 잘 모르며, 일시적인 운동장애, 진행되는 뇌병변, 지능장애, 척수 이상에 의한 장애는 뇌성마비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 \*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뇌성마비=뇌병변장애'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뇌성마비 또한 뇌병변장애에 포함되는 하나의 장애유형입니다.

1) 정진업 외17명, 알기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4 / 일레인 게리리스 외3명, 뇌성마비 아동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P2 / 박희찬, "뇌성마비장애인 출현율 연구의 동향과 과제"[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9권 4호 (2016)

## • 뇌성마비의 원인<sup>2)</sup>

뇌성마비의 75~80%는 임신 기간(출산 전, 분만 전후, 출산 후 등)동안 발생하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신생아의 뇌손상이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단일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뇌성마비는 출생 전에 이미 많은 뇌손상을 입어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만삭에 태어난 아이에게 뇌성마비를 야기할 정도의 뇌손상을 일으킨 원인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뇌성마비의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I 조산아에서의 뇌성마비의 원인

조산 및 저체중은 뇌성마비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한 신생아를 조산아라고 하며, 뇌성마비의 약 50%가 조산아에서 발생합니다. 백질 부분 손상은 특히 조산아 또는 태내에 호흡곤란에서 발생되는데, 백질 부분은 혈관 분포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손상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의 표면에 있는 회백질에는 운동, 언어, 시력 등 각기 기능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있어, 백질연화증이 뇌실 주변부에 발생하면 뇌실 주변부에 있는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전달로에 이상이 생겨 뇌성마비 등과 같은 운동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 I 만삭 출산아 뇌성마비의 원인

조산이 아닌 만삭 출산아에게도 뇌성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삭 출산아의 뇌성마비 원인을 임신 시기에 따라 출산 전, 주산기, 출산 후 원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전 원인	태아가 자궁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뇌성마비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예) 유전적 이상, 선천성 감염, 선천성 뇌병변
주산기 원인	분만 과정이나 분만 직후에 뇌성마비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예) 분만 진통 중 저산소증
출산 후 원인	분만 후 신생아시기에 뇌성마비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예) 신생아 뇌졸중

그러나 원인에 따라서는 정확히 언제 뇌손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2) 정진엽 외17명, 알기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13 / 정진엽 외31명,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13



## 뇌성마비장애란?

### • 뇌성마비의 증상<sup>3)</sup>

뇌의 운동 신경 부분이 손상되면 뇌성마비 증상이 발생하게 되며, 뇌성마비의 증상은 뇌성마비가 침범한 부위 및 양상, 중증도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성마비는 운동장애를 동반하는데, 대표적으로 성장 발육 지연과 보행 및 운동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조화로운 신체운동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운동장애 이외에도 감각·인지·의사소통·행동장애 및 경련성 질환·사시와 같은 안구운동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구강의 운동장애가 발생하여 음식의 섭취가 곤란하여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 호흡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장 및 방광기능 장애가 나타나 위식도 역류, 구토 및 배변습관 곤란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운동장애가 심하거나 지적장애가 심한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뇌손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흔히 간질과 같은 경련성 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 • 뇌성마비의 분류<sup>4)</sup>

뇌성마비라는 질병을 분류하는 이유는 치료하는 의료진들 간의 정보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예후에 관한 상담·치료 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분류를 통해 뇌성마비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뇌성마비의 분류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뇌성마비는 분류에 따라 다양한 경중도(심한정도)와 예후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치료방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류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리학적 유형에 따른 분류, 해부학적 부위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으며 치료계획을 수립할 때 이들 분류법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 정진업 외 17명, 알기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20-25

4) 정진업 외 17명, 알기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26 / 정진업 외 31명,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37



## I 생리학적 유형에 따른 분류

<p>경직형 Spastic type</p>	<p>경직성(spasticity)이란 관절을 빠른 속도로 구부리거나 펴면서 근육의 길이를 늘일 때,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근육이 잘 늘어나다가 갑자기 근육이 굳어지면서 잘 늘어나지 않는 현상으로 근육의 긴장성이 증가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장애인의 2/3가 경직성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경직성 및 변형에 대해 물리치료, 석고고정, 바클로펜(baclofen), 보툴리눔독소 주사(botulinum toxin-type A), 선택적 척수 후근 절제술(selective dorsal rhizotomy, SDR), 정형외과적 수술 등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p>
<p>근긴장 이상형 Dystonic type</p>	<p>대뇌기저핵(basal ganglia)의 이상이 주된 병변으로 수의운동(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자세 유지 시 사지, 목, 안면 등을 지속적으로 불규칙하게 뒤틀거나 꿈틀거리는 불수의운동(의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나타나는 이상운동)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장애인의 1/4에 해당하며 움직이거나 긴장하면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지고 수면 시에는 소실됩니다. 근긴장이상형은 경직형에 비해 수술적 치료의 결과가 일정하지 않아서, 수술적 치료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p>
<p>운동 실조형 Ataxic type</p>	<p>평형감각장애와 협동운동장애 등 소뇌의 기능장애로 오는 증상으로 뇌성마비인의 1% 미만이며, 근긴장이상형에서 나타나는 불수의운동은 없고, 보행 시 잘 나타납니다. 운동실조형은 경직형 사지마비와 구별해야하는데, 운동실조형은 성장함에 따라 증상이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기 때문이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게 나타납니다.</p>
<p>혼합형 Mixed type</p>	<p>상기 2종류 이상의 유형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혼합형이 10% 정도 있으며, 뇌성마비 아동의 10%정도가 혼합형으로 대부분 경직형에 준하여 치료를 시행합니다.</p>





# 뇌성마비장애란?

## I 해부학적 부위에 따른 분류

### 편마비 Hemiplegia

- 편마비는 뇌성마비장애인의 약 30%를 차지하며, 같은 쪽의 상지와 하지가 이환되는 형태입니다.
- 마비 증상은 몸통 근처 부위보다는 몸통과 먼 쪽 부위에서 더 심한 양상을 보이며, 상지에서는 50~60%의 감각 결손이 있고 주로 고유감각(위치·압박·운동·진동각)장애가 나타납니다.
- 집중력 결여의 빈도가 높고, 사시나 반맹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장애인보다 시기는 늦을 수 있지만 거의 모든 뇌성마비아동이 보행이 가능하며 대개 일반 지능을 가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보편적인 사회 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양측마비 Diplegia

- 양측마비는 주로 하지를 침범하며, 양측이 대칭적입니다. 상지의 이환도 있으나 하지에 비해서 증상이 경한 양상을 보이며, 아무리 경한 증상이라도 상지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신 마비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 양측마비는 백질연화증(미숙아의 뇌실주위에서 자주 나타나는 병리소견으로, 산소 결핍으로 뇌실 주변의 백질부위가 괴사된 것)의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 사지마비 Quadriplegia

- 양측 상지와 하지 모두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형태로, 해부학적 부위에 따른 분류 중 가장 심한 형태입니다.
- 저산소, 혹은 무산소증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경련성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약 75%의 뇌성마비아동에게서 지능저하가 나타납니다.
- 침흘림, 연하·발음장애 등이 동반되며, 2차적으로 영양결핍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보행은 힘들며, 성장기간 중 척추 측만증 및 고관절 탈구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 깊은 관찰과 시기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 고도의 사지마비는 보행보조기를 사용해도 보행이 어려우며,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된 치료 목표를 통증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이동수단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 뇌성마비의 치료<sup>5)</sup>

### | 물리치료(Physical Therapy)

물리치료는 운동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치료를 통칭하는 용어로, 뇌성마비 아동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뇌성마비 아동에게 물리치료는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보이는 근 긴장의 정상화를 원칙으로 하며, 비정상적인 반사작용을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자세반응을 경험하게 하여 머리와 몸통의 정상적인 발달순서를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경직형 아동은 관절가동범위를 확대하여 구축의 위험성을 줄이고, 무정위형 아동은 근위부를 안정시켜 정중선 유지 및 대칭성 자세 유지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균형과 수의적인 움직임을 증진시켜 아동이 스스로 자세를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 | 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

작업치료는 주로 상지의 동작에 초점을 맞추며, 미세동작 호전을 통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됩니다. 뇌성마비 아동이 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눈-손 협응 능력, 적절한 자세, 물체를 조작하는 기술 등이 필요하고, 물건을 쥐거나 조작하기에 앞서 무엇인가가 손에 닿았을 때 느낌이 즐거워야 합니다. 작업치료를 통해 이러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학습, 놀이 등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 시킵니다.

### | 언어치료(Speech language Therapy)

뇌성마비 아동은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하여 호흡에서 조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에 문제를 보이면서 전체 아동의 75~85%가 언어장애를 보입니다 (Love&Webb,2001). 뇌성마비가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현되는 장애이므로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으나, 다분야적인 접근을 통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도모합니다. 주로 자세, 호흡, 발성, 조음 등의 치료가 진행됩니다.

### | 스노젤렌치료(Snoezelen Therapy, 심리안정치료)

스노젤렌은 학문적으로 "쿵쿵거리며 냄새 맡는 것"과 "꾸벅꾸벅 조는 것"이라는 뜻의 네덜란드어를 합성한 것으로, 부드러운 음악이 들리고 은은하면서 매혹적인 빛이 나는 공간 또는 그 안에서 행하는 치료활동입니다. 스노젤렌치료는 뇌손상 환자 및 치매환자, 만성 통증 환자 등 심리적 이완이 요구되는 성인 및 중증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정진영 외3명,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235 / 김향희, 신경언어장애, 시그마프레스 P398



## 뇌성마비장애란?

### | 보바스치료(Bobath Therapy, 신경발달치료)

보바스치료의 기본개념은 비정상적인 근 긴장도를 관절운동, 자세잡기, 정상 운동패턴 촉진 등을 통해 정상화시키고, 비정상적 원시반사를 억제하며 자동반응을 촉진함으로써 운동 양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치료는 몸통 부위(근위부)에 있는 '키 포인트 조절점'에서 시작되며, 키 포인트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머리, 목, 척추, 어깨나 골반 등에 위치합니다. 대부분 비슷한 키 포인트를 바탕으로 치료하는데, 조절점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은 각각 개인별로 다릅니다.

### | 보이타치료(Vojta Therapy)

신체의 일정부위를 자극함으로써 고유감각 자극을 주어 반사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정상적 이동 동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극을 통해서 반사적 뒤집기(reflex turning)와 반사적 기기(reflex creeping)를 유발하는 방법을 쓰며, 주로 1세 이하 영아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나 경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악화시킬 수 있고 치료 과정 자체도 뇌성마비 아동에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 | 감각통합치료(Sensory integration Therapy)

신체와 환경의 여러 감각 정보를 뇌에서 조절하는 과정을 감각통합이라 하며, 이를 통해서 신체를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치료법입니다.

감각통합치료의 목적은 특정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의 인지, 기억, 운동 계획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뇌성마비 아동의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으나, 본래 학습장애 및 자폐증 치료에서 시작되었으므로 뇌성마비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 수치료(Aquatic Therapy)

수치료는 물의 부력을 이용하여 체중 부하가 적은 상태에서 자세 유지, 관절 움직임, 유산소 운동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로 특히 재활의학 분야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 I 승마치료(Hippo Therapy)

1950년대에 소아마비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비교적 최근 뇌성마비 아동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승마를 통해 근 긴장도, 균형, 몸통 조절 등을 호전시킬 수 있고, 치료 매개 동물인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인 도움도 된다는 가정 하에 시작된 치료입니다.

## I 연하치료(Deglutition Therapy)

연하치료란, 씹고 삼키는 능력의 손상으로 연하곤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식이조절 및 자제 조절을 통한 치료적 접근방법입니다. 삼키는 음식을 구강에서 위까지 이동시키기 위하여 50가지 이상의 신경 및 근육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만약 신경이나 근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연하에 문제가 생기면 효과적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며, 음식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키거나 아예 기도를 막아서 질식이 되는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삼킴 시에는 액체나 음식물이 기도 혹은 폐 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호흡과 잘 조화를 이루게 돕습니다.

## I 심리치료(Psychology Therapy)

심리치료란, 심리적 기법을 사용하여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의 문제를 다루는 치료법으로 종류는 다양하며 보편적으로 미술, 놀이, 음악치료 등이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행동에 제약이 따르고 사회경험의 폭이 제한되며, 이것이 아동시기 발달 및 사회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는 2차적 손상인 통증으로 인한 강박증·예민성·불안·우울 등 부정적 감정 상태 및 사회·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 뇌성마비장애란?

## • 뇌성마비장애인과 상호작용 매뉴얼

### 의사소통

#### I 언어장애가 있을 경우, 주의 깊게 끝까지 경청해주세요.

- 뇌성마비장애인은 안면근육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지가 흔들리며 경직되는 모습, 어눌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해 지능이 낮으리라고 생각되기 쉬우나, 실제로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언행에 주의해주세요.
- 긴장하거나 당황하게 되면 발음에 곤란을 느끼고, 목, 사지, 안면근육의 경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세요
- 만약 뇌성마비장애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반복해서 다시 물어봐도 괜찮으니 천천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예)“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 소리 내어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 휴대폰 문자나 필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으며 장시간 대화가 필요할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기(AAC)’ 및 간단하게 휴대폰 어플을 다운받아 기본적인 대화를 하거나, 의사소통판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기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 AAC)

노우테크  
(No-tech)

메시지 전달을 위해 전자적 요소가 없이 교사나 보호자가 직접 상징을 출력하고 올려서 붙여 만드는 의사소통 책 또는 의사소통 판을 의미



로우테크  
 (Low-tech)

음성을 녹음해서 사용하는 단순한 전자 의사소통 도구로, 녹음한 음성을 저장하였다가 재생하여 사용하며, 종류에 따라 저장시간이 15초에서 300초까지 다양하고 단어나 문장 재생이 가능



하이테크  
 (High-tech)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단독 도구부터 어플까지 다양하며,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성을 합성하여 출력가능. 최근 스마트기기 발달로 어플형 프로그램이 출시



어플  
 (나의 AAC)

안드로이드 / IOS에서 모두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의사소통판으로 말하기, 상징으로 말하기, 문자로 말하기, 이야기 만들기로 구성



## 뇌성마비장애란?

### 이동 지원 시

#### |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도움을 주세요.

-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장애인을 도울 때에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갑작스런 움직임이나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근긴장도가 올라가 휠체어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출발하거나 또는 정지 등의 환경의 변화가 있을 시 안내가 필요합니다.
- 보행이 가능하나 불안정한 걸음걸이를 보이는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 등에서는 부축이 필요한지 확인 후 도움을 드립니다.
- 수동휠체어를 타는 뇌성마비장애인은 스스로 바퀴를 밀어 이동하지만, 간혹 고르지 못한 바닥·경사로·높낮이의 차이가 있거나 틈이 있는 곳에서는 스스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 타

#### | 그 외에 유의사항

- 뇌성마비장애인은 근육의 강직으로 인한 발달지연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외관 상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성마비장애인을 대할 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주세요.
- 과잉보호나 과잉염려, 과도한 친절은 뇌성마비장애인에게 동정이나 참견이 될 수 있으니 선불리 도움을 주기보다는 기다리거나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한 후 행동합니다.
- 휠체어 등 보조기기는 뇌성마비장애인의 신체 일부라 생각하고 붙잡거나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 다과 및 음료수 접대 시, 포크나 빨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사용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뇌성마비장애인의 이동수단이 되는 보조기기는 대부분 부피가 크기 때문에 좁은 문이나 협소한 구간보다는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주세요.

## • 뇌성마비장애에 대한 Q&A

### I 뇌성마비의 출현율<sup>6)</sup>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뇌성마비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거의 확보할 수 없어 뇌성마비장애인의 출현율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유럽·호주·미국 등에서는 1970년대부터 뇌성마비장애인의 출현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뇌성마비장애인 출현율은 연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인구의 약 0.2%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I 뇌성마비는 유전이 되나요?

대부분의 뇌성마비는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뇌성마비 중에서 유전적 이상으로 인하여 소두증과 같이 중추 신경계의 선천적 기형이 원인인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유전병의 가족력이 있으면 당연히 자손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정확히 진단된 유전병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아이가 뇌성마비라 하여 둘째 아이도 유전적 원인에 의해 뇌성마비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첫째 아이가 뇌성마비아동인 경우, 둘째 아이를 임신하기 전 전문의를 찾아가 진료 및 검사를 하여 첫째 아이의 뇌성마비 원인을 최대한 규명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잠재적인 위험인자들을 잘 조절한다면 건강한 둘째를 출산할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 I 아이가 커갈수록 뇌성마비가 점점 심해지지는 않나요?

뇌성마비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운동기능장애를 남기는 비진행성 질환입니다.

비진행성 질환이란 뇌의 손상이 점점 심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비록 뇌의 손상은 심해지지 않지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임상양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자라면서 운동기능 장애뿐 아니라 시각·인지 및 의사소통장애, 경련 등의 증상이 발견되어 마치 뇌성마비가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뇌성마비 진단이 내려지면 운동기능 장애 외에도 같이 동반될 수 있는 여러 장애들을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해 주기 위해 뇌파·청력검사, 안과적 진찰, 정신과적 평가 등을 시행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박희찬, "뇌성마비장애인 출현율 연구의 동향과 과제"[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9권 4호 (2016)





## 뇌성마비장애란?

### I 지능은 정상인가요?

뇌성마비 아동의 1/3에서 지적 장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운동기능장애뿐 아니라 인지·학습·행동·의사소통 등 여러 영역에서 기능저하를 동반하여 뇌성마비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어려움으로 작용됩니다.

학교에서의 생활, 교우 관계 등 사회적 역할이 제한되는 경우, 뇌성마비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뇌성마비장애인 뿐 아니라 가족이 치료에 참여하여 사회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I 뇌성마비장애인의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뇌성마비는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증증도를 가진 질환군입니다.

경도의 뇌성마비의 경우,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임상양상이 중증일 때 수명이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 I 완치는 되나요?

뇌의 손상은 영구적이며 비진행적이지만 신체기능은 변화될 수 있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의 목적은 완치가 아니라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치료 목표는 상태에 따라 다르며 독립보행이 가능할 경우, 좀 더 보행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고, 독립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행보다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통증을 줄이는 것,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 등이 치료 목표가 될 것입니다.





## 2장. 뇌성마비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

·생활지원	34
·주거지원	72
·양육·돌봄·교육 지원	86
·건강 지원	115
·취업 지원	135



## 1. 생활 지원

01 생계지원	35
02 위기지원	47
03 일상생활지원	50
04 이동지원	57
05 법률지원	59
06 요금감면지원	61
07 문화여가지원	66



# 01 생계지원

## I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3.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4.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 마이홈 (☎1600-1004, www.myhome.go.kr)



# 01 생계지원

## I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상** 신청일 현재 신청가구의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동시 충족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재산기준 : 1억 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부양의무자 기준

구분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519,202	5,694,194	6,530,247	7,366,299	8,202,351	9,038,404	9,874,457
재산기준	5억원						

- 내용**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 해산, 장제급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제도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 판정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 결과를 적용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18세미만, 65세이상, 희귀난치성 질환대상자 등

-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신청

## I 아동수당

- 대상**
  - 0~만 6세(72개월) 미만 모든 아동('19.1~'19.8월까지)
  - 0~만 7세(84개월) 미만 모든 아동('19.9월부터)
- 내용**
  -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19.1~'19.8월까지)
  -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19.9월부터~)
- 방법**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포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I 장애인 등록신청 및 등록진단비 지원

- 대상**
  - 등록신청 :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 등록진단비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 내용**
  - 등록신청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 서비스 제공
  - 등록진단비 :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 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000원
  - ※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방법**
  - 등록신청 :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등록진단비 :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I 장애아동수당

-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지급
-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1급, 2급,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월 10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01 생계지원

### I 장애수당

- 대상**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월 4만 원	월 4만 원	월 2만 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 I 장애인연금

-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19년 4월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32만 3,750원 · 기초급여 25만 3,750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27만 3,750원 · 기초급여 25만 3,750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 자주 하는 질문

#####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 • 장애등급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검사비용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검사비용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 01 생계지원

### I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17세 가입 가능
2. 내용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 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 적립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4만 원까지 가능
3. 방법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디딤씨앗지원단(☎02-790-0786, www.adoncda.or.kr)

### I 꿈나래통장(서울시)

1. 대상 다음 1~3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기준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4. 3. 15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
2. 내용 참가자가 3년/5년간 매월 자녀 교육자금융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수급자) 또는 1/2금액(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는 통장
3. 방법 •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4. 문의 다산콜센터(☎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I 희망키움통장(I, II)

1. 대상	구분	가입기준
	I 유형 (기초수급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4인 기준 110만 7,249원)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li> <li>재정 지원 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li> </ul>
	II 유형 (차상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 가구</li> <li>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li> </ul>

2. 내용	구분	훈련비 지원율
	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지급</li> <li>3년 이내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li> </ul>
	I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 (10만 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li> <li>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li> </ul>

3.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I 청년 희망키움통장

1. 대상 일하는 15~39세 미만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1인 가구 기준 34만 1,402원) 이상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2. 내용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지원

지원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소득 81만 원 :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29.5천 원 = 월 39만 5,000원 ⇨ 3년간 약 1,422만 원</li> <li>월 소득 113만 원 이상 :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49.6천 원 = 월 59만 6,000원 ⇨ 3년간 약 2,145만 원</li> </ul>
------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에 문의 후 신청



## 01 생계지원

### I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시)

- 대상**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 내용**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금액		비고
본인 저축액(선택)	10만 원	15만 원	매월 적립 시
근로 장려금	10만 원	15만 원	
총 적립금(2년)	480만 원 + 이자	720만 원 + 이자	
총 적립금(3년)	720만 원 + 이자	1,080만 원 + 이자	

- 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다산콜센터(☎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I 내일키움통장

- 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성실\*참여자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내용**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의 1:1)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적립  
※ 평균 1,512만 원, 최대 1,620만 원 지원 가능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 I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서울시)

- 대상**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공고일(2019.4.1.)기준 현재 서울 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장애1,2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등급 3급 이상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100% 이하인 가구
- 내용**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을 모으는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참가자 저축액과 서울시 지원금 등으로 만기 적립 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통장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선택)①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매월 적립 시
시비 지원금 ②	10만 원	15만 원	15만 원	
월 적립금 (①+②)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	
3년 후 만기적립금 예상액	900만 원 + 이자	1,080만 원 + 이자	1,260만 원 + 이자	

- 방법**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구 자치구 누리집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1차)서류심사 및 (2차)면접심사 후 최종합격자 발표
- 문의** 다산콜센터(☎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01 생계지원

## I 근로장려금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18.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부모)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018년 기준)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2. 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3. 방법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 국세청 홈택스 ☎126, www.hometax.go.kr

## I 자녀장려금

- 1. 대상** 만 18세 미만(2000.1.2. 이후 출생, 장애자녀는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 2. 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50~70만 원 지급
  -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 3. 방법**
  -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자주 하는 질문

#### • 소득 가구에도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변경 전) 생계급여 수급자 수급 불가      (변경 후) 생계급여 수급자 수급 가능





# 01 생계지원

## I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초과 100% (4인 기준 461만 3,536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보증 대출	2,000만 원 이내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 (보증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 대여목적

-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필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⑥ 자기개발훈련비
-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02 위기지원

### I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내용
위기 사유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만 256원, 4인 기준 346만 152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 급 여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19만 4,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부 가 급 여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6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75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 및 신청



## 02 위기지원

### I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 대상 가정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족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신혼기·중년기·노년기 부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가족상담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상담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	가족캠프, 가족사랑의 날 행사, 건강가정캠페인 등

3. 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및 방문, 온라인 신청

### I 가족역량강화 지원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저소득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기능 회복이 필요한 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시도), 사망, 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 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함께하는 저소득 취약가족의 돌봄·가사 지원 등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1577-9337, www.familynet.or.kr)

## I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3.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03 일상생활지원

### I 장애인 활동지원

- 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 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
-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1355) 지사에 상담 후 신청

#### 자주 하는 질문

##### •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년간 지원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대상**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 방법**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 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계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 문의**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www.at4u.or.kr](http://www.at4u.or.kr))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 알려드립니다

##### •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http://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①시각장애 :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 ②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③정각·언어 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 I 사랑의 그린PC 보급

- 1. 대상**
  -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등
  - 단체 : 노인회관,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사회복지시설 등
  - ※ 보급 후 2년 미만자 재보급 불가
- 2. 내용**
  -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를 정비해 무료로 제공
  - ※ 보급 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제공
- 3.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우편 신청
  - ※ 시·도별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
  - 사랑의 그린PC 누리집(lovepc.nia.or.kr) 신청 / 상담전화(☎1588-2670)

## I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여성 청소년  
※ 2001년~2008년 생 / 2019년 기준
- 2. 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월 1만 500원, 연 최대 12만 6,000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
-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4. 문의**
  - 청소년전화 1388 /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 국민행복카드발급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 03 일상생활지원

### I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1~3급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I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 I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 대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등록장애인
- 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 상담,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장애인식개선 등
- 방법**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1644-0420)문의 / 지자체별 인권센터에 신청

## I 성인 최종증 뇌성마비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1. 대상
  -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장애인등록자 중(최근 서울 거주 6개월 이상) 성인기 최종증 뇌성마비장애인(장애등급 1급만 해당)
  - 최종증 장애로 복지서비스 이용에 소외된 뇌성마비장애인
    - ※ 현재 학교(특수학교) 재학생(전공과 포함)은 제외
2. 내용
  - 이용기간 : 2019. 3. ~ 2021. 2. (2년)
  - 주 5일 이용, 이용료[25만 원/월] 개별부담, 식대 5만 원 별도 (수급자 면제, 차상위 50% 감면)
  - 돌봄서비스 및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 보호자 대상 교육 및 상담 제공
3.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 I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1.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인 수급자이며,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으로 야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연령, 건강 등으로 실질적 케어가 불가능한 경우
  -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야간에 정기적인 확인 필요한 경우
  - 수면 시 체위 변경, 벨라톤 사용, 기저귀 교체, 대·소변 지원 등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이용자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우선지원 자격 부여
2. 내용
  - 순회돌봄미(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제공인력)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시행
  - 방문시간 및 횟수 : 22시~익일 6시, 2~3회 순회방문
  - 돌봄 서비스 내용 : 개인위생관리, 신체·섭식기능 유지증진, 안전확인 등
3.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 03 일상생활지원



### 알려드립니다

- 2019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수행기관

번호	지역구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	02-451-6000
2	강동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02-440-5200
3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02-989-4215
4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02-2662-3491 ~4
5	관악구	사단법인 굿하트	02-3481-7090
6	광진구	광진니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348-8915
7	구로구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66-0233
8	금천구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02-6912-8062
9	노원구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2092-1757
10	도봉구		
11	등대문구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59-5603
12	동작구	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02-829-7100
13	마포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02-306-6212
14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63-3042
15	서초구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088-3119
16	성동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02-2290-3191
17	성북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02-923-4555
18	송파구	송파방이복지관	02-3432-0477
19	양천구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02-2698-9191
20	영등포구	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02-829-7100
21	용산구	용산장애인복지관	02-707-1970
22	은평구	사단법인 초록	02-389-7708
23	종로구	사회적협동조합 종로돌봄센터	02-3673-3966
24	중랑구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02-438-2691

## I 주요보조기기 관련제도

부처	보건복지부			
사업명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행 기관	건강보험 공단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건강보험 공단
지급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 및 차상위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자
교부 품목	9종 89품목		28종	17종
급여 내용	상한액 범위 90%	상한액 범위 전액	전액 지원	연간 한도액 160만원 (일반대상 15%, 경감대상 7.5%,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부처	고용노동부		미래창조 과학부	교육부
사업명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공학 기기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학습보조 기기지원
수행 기관	근로복지 공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한국 정보화 진흥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지급 대상	산재 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근로자	등록 장애인	장애학생
교부 품목	52종	26종	시각 49개 지체·뇌병변 18개 언어 31개	학습 보조기기
급여 내용	전액	무상지원 고용유지 조건	구입가격 80~90%	학교에 지원





## 03 일상생활지원

### I 영역별 보조기기 안내

영역	제품사진	설명
자세유지 보조기기		올바른 자세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각 종 벨트 및 서포트 장치를 통해 앉기, 서기, 눕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b>제품</b> 자세보조용구, 기립훈련기, 피더시트 등
이동 보조기기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b>제품</b> 휠체어, 워커, 전동스쿠터 등
일상생활 보조기기		장애인이 식사, 용변, 목욕, 의복착용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보호자가 보조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보조기기 <b>제품</b> 목욕의자, 이동용 변기, 식사보조도구, IoT기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기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b>제품</b> gotalk, 이지컴, 키즈보이스, 어플(스마트AAC, 진소리) 등
작업 및 학습 보조기기		장애인의 직업,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b>제품</b> 작업테이블, 필기보조도구, 페이지터너 등
감각 보조기기		시·청각 장애인이 컴퓨터, 독서 및 일상생활에서 정보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b>제품</b> 독서확대기, 한소네, 센스리더, 음성증폭기 등
여가 보조기기		장애인의 여가, 레포츠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b>제품</b> 특수자전거, 스포츠용 휠체어, 카드혼합기 등
IT접근 보조기기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컴퓨터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우세한 신체부위를 활용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b>제품</b> 빅키보드, 조우스, 롤러조이스틱 등



## 04 이동지원

### I 장애인콜택시(서울시)

1. 대상 지체, 뇌병변 1·2급, 기타 휠체어 이용 장애인 1·2급
  - 지체, 뇌병변 3급인 임신부(산모증 등 확인)의 경우 병원 목적 이용 시에만 가능,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하며 탑승 시 증빙자료 현장 확인 후 가능
  - 휠체어 이용 국가유공자 1·2급(유공자 확인원), 복합장애의 경우 각각 개별 장애이용기준을 적용, 가능요건(휠체어 유무, 보호자 동반 등) 미충족시 이용불가
  
2. 내용 중증장애인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교통
  - 운행시간
    - 24시간 체계 (주간 07:00 ~ 22:00 (15시간) / 야간 22:00 ~ 익일 07:00 (9시간))
  - 운행지역
    - 서울시계 운행 원칙 (단, 서울시 인접지역 운행가능)
    -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인천국제공항
    - 출발지는 서울시내여야 이용이 가능(서울 이외 출발지 배차 불가)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5km 까지 1,500원
    - 추가요금 : 5km 초과 ~ 10km 이내 km당 280원, 10km 초과 시 km당 70원

※ 백 원 단위 절사, 톨게이트 비용 이용자 부담
  
3. 방법 콜센터 전화 또는 인터넷콜센터로 호출
  
4. 문의
  -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 인터넷콜센터 누리집([calltaxi.sisul.or.kr](http://calltaxi.sisul.or.kr)) / 문의전화(☎1588-4388)



## 04 이동지원

### I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02-2092-0001, 0088)

### I 장애인 운전교육장 입차 및 순회교육

1. 대상 1~4급인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1~6급)으로 제 1종 및 제 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내용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하는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방법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 / 국립재활원에 신청

#### 자주 하는 질문

-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데 장애를 입은 경우 운전교육이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단,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CPAD 검사 후 합격 유무에 따라 운전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은 지체·뇌병변·청각 1~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교육을 실시  
-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5~6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면 운전교육이 가능합니다.
-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에서는 1종보통과 2종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05 법률지원

### I 무료 법률상담

1. 대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2. 내용 사이버(인터넷), 전화 상담, 이동법률상담차량(버스) 운영  
※ 차량 방문일정은공단 누리집(www.klac.or.kr)에서 확인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 I 마을변호사

1. 대상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읍면동 거주 주민 누구나
2. 내용 • 해당 읍면동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공(필요한 경우 방문상담 진행)  
•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신속한 법률구조 지원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 마을변호사를 확인한 후 전화·이메일 등으로 상담 신청  
※ 마을변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4.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법무부(☎02-2110-3178)



## 05 법률지원

### | 마을세무사

1. 대상 주민 누구나(생활이 어려운 주민 우선 상담)
2. 내용 마을세무사가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 지원,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지원 등의 세무 서비스 제공
3. 방법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서 해당지역(시군구 또는 읍면동)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전화·팩스·이메일로 상담 신청
4.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안전부 지방정책과(☎02-2100-3597)

### | 법률홈닥터

1.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2. 내용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유관기관 연계 등
3. 방법 방문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누리집(lawhomedoctor.moj.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53, 3824)

### | 법률구조제도

1.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76만 7,000원)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692만 원)이하 농·어업인
2. 내용
  -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천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 06 요금감면지원

### I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 수신료 전액 면제</li> </ul>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li> <li>•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li> <li>•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li> <li>•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li> <li>• 35% 감면</li> <li>• 114 안내요금 면제</li> <li>•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li> </ul>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나 민원24 (www.minwon.go.kr)로 온라인 신청
교통비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요금 감면</li> <li>•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li> <li>• 공영버스 무료 이용</li> </ul>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1544-77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요금 감면</li> <li>-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항공(등록 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감면</li> <li>-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감면</li> </ul>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1588-2001)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li> <li>-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50% 감면</li> <li>- 4~6급 장애인 20% 감면</li> </ul>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 06 요금감면지원

### I 장애인을 위한 요금 감면제도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장애인(1~3급) 50% 감면</li> <li>- 경증장애인(4~6급) 30% 감면</li> </ul> </li> <li>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li> <li>-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li> </ul> </li> </ul>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li> <li>-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li> </ul> </li> </ul>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요금	1~3급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li> </ul>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li> <li>- 지자체별로 지원</li> </ul>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li> </ul>	한국전력 ☎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li> <li>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li> <li>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li> </ul>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1~3급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1~3급)</li> </ul>	사이버경찰청 ☎182
기타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li> </ul>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li> </ul>	코레일 ☎1544-7788

## I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시외통화,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450분무료]</li> <li>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최대 3만 3,000원 감면</li> </ul> </li> <li>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li> <li>114번호안내 면제</li> </ul>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5)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감면(각각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최대 2만 1,000원</li> <li>※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li> <li>※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li> <li>※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li> </ul> </li> </ul>							
각종 공공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하수도요금 감면</li> </ul>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li> </ul>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요금 감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생계급여·의료급여</td> <td>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td> </tr> <tr> <td>주거급여·교육급여</td> <td>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td> </tr> </tbody> </table> </li> </ul>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한국전력(☎123)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세 비과세</li> </ul>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06 요금감면지원

### I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요금 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 수신료 면제</li> <li>-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li> </ul>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li> <li>-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li> </ul>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화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li> </ul>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li> </ul>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li> <li>•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li> </ul>	읍면동 주민센터

### I 양곡할인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할 경우 양곡대금의 50~90% 할인 지원
3.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I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대상 1~3등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2.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3. 방법 국세청 콜센터(☎126) 문의 /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 I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 1. 대상**
  - 장애등급 1~3급인 장애인 본인(시각 4급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 2. 내용** 장애인용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 3. 방법** 시군구청 세무(채무)과에 문의 후 신청



## 07 문화여가지원

### I 통합문화이용권

1. 대상 6세 이상(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8만원) 발급
  - 문화예술 : 영화, 도서, 음반, 공연, 전시, 사진관, 화방 등
  - 국내여행 : 숙박업소, 철도, 고속버스, 여행사, 놀이공원, 스키장, 온천 등
  - 체육분야 :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관람권, 운동용품, 체육시설 등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 결제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온라인 가맹점 목록 확인 후 이용
3. 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신분증 지참) ⇨ 7일 이내 수령
  -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발급 신청(본인 인증 필요) ⇨ 15일 이내 NH농협은행 영업점 방문 수령 또는 자택 우편 수령 ⇨ 수령 등록 후 사용
4.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http://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1644-4000, 수령 등록 및 분실신고 등)



## 자주 하는 질문

### • 문화누리카드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2019년 기준 문화누리카드 신규발급 및 재충전(재발급)은 주민 센터 또는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2019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발급기간(19년 기준 11월 30일) 이내인 경우라도 각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인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반납 됩니다. (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 주세요.

### •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드이용을 못하나요?

-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어도 당해 연도 이용기간 종료 시까지는 지원금으로 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의자 사망 시 카드이용 불가).

### • 어디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 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사용하기'에서 오프라인가맹점 및 온라인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이외에 본인충전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 가능합니다. (최대보유금액 10만 원,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충전 가능) 개인비용 충전 후 남은 잔액은 전국 농협 영업점을 통하여 인출 가능합니다.

### •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문화누리카드도 같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만5~18세) 이용자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 문화상품권은 문화누리카드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 07 문화여가지원

### | 스포츠강좌이용권

-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만 5~18세 유·청소년  
※ '19년 하반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만 12~23세 장애인 대상 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예정
- 2. 내용** 1인당 매월 8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svoucher.kspo.or.kr)
  -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확인 가능
- 3.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 4.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내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참고



## 자주 하는 질문

-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가요?  
- 매년 12월 전국 동시 접수기간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접수기간인 12월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공지됩니다. '동시 접수기간' 이후에는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안내 문자메시지 또는 누리집(MY페이지 → 강좌이용권 신청현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신청 가능여부는 시군구청의 예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므로 거주 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해주세요.
- 어느 시설에서든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등록된 시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의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거주지역으로 조회하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대상으로 확정되면 카드사에서 카드명역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본인 확인(개인정보)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 전용카드 발급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및 강좌를 선택해 온라인 결제를 완료하면 시설로 수강료가 직접 입금됩니다. 시설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는 언제 결제해야 하나요?  
- 강좌를 수강하는 해당 월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해당 월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미결제분은 소멸됩니다.



## 07 문화여가지원

### I 장애인 체육시설




1. 대상 등록장애인 등
2. 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I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2.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 교육 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3. 방법
  - 온라인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에서 발급 신청
  - 오프라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우편 신청
4.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http://www.forestcard.or.kr))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 I 관광정보 안내

### 1. 여행지 접근성 픽토그램

1. 단독 접근 가능 	2. 장애인 활동 보조 필요  어려움 약간 어려움 쉬움	3. 단차없음 	4. 청각장애인 접근성 
5. 시각장애인 접근성 	6. 저상버스 접근가능 	7. 장애인 전용리프트 	8. 장애인 화장실 
9. 승강기 유, 무 	10. 장애인 전용 주차장 	11. 일반 주차장 	12. 수동 휠체어 대어 
13. 전동 휠체어 대어 	14. 장애인 전용 매표소 	15. 장애인 전용 객실 유, 무 	16. 테이블 비치 유, 무 

### 2. 장애인 여행 도움사이트

구 분	사 이 트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정보	korean.visitkorea.or.kr
서울시복지포털 - 장애인 관광정보	wis.seoul.go.kr
경주장애인관광 도우미센터	www.jangtour.org ☎054-745-2255
휠체어로 즐기는 대구관광	www.wheeltour.or.kr ☎053-633-8001, 053-621-616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관광정보	www.visitjeju.net

### 3. 장애인 여행관련 여행사

구 분	사 이 트	소재지	연락처
유니버설디자인투어	www.universaldesigntour.com	서울 종로구	02-736-7047
나눔여행사	www.nanumtour.kr	서울 종로구	02-599-5411
곰두리여행	www.gomduritour.com	서울 마포구	02-6383-1000
한벗투어	hanbeot.modoo.at	서울 용산구	02-702-1515
모두를 위한 관광	www.tourforall.net	경기 고양시	031-978-0755
두리함께 (제주도)	www.jejudoori.com	제주시	064-742-0078



## 2. 주거 지원

- |             |    |
|-------------|----|
| 01 주택임대지원   | 73 |
| 02 주거안정자금지원 | 79 |
| 03 주거환경개선지원 | 82 |



# 01 주택임대지원

## I 임대주택 지원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 LH마이홈(☎1600-1004)

####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31만 5,641원) 이하  
- 총자산 :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유기기간 30년)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 LH마이홈(☎1600-1004)





## 01 주택임대지원

### 행복주택 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 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 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문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http://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http://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약616만 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9만 원 이하
-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 LH마이홈(☎1600-1004)

## I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1억 9,6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가구인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생, 만19세~39세)	자격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공사 공고문 참조)

2. 지원 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신혼부부 85㎡ 이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3.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4. 방법 • 기존주택, 소년소녀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5. 문의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지방도시공사



# 01 주택임대지원

## I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기존주택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3인 기준 270만 907원) 이하 총자산 1억 9,6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공사 공고문 참조)

2. 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  
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기존주택·신혼부부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단, 신혼부부 II의 경우 시세 80% 이하
- 청년매입임대 : 1, 2순위 시세 30%, 3순위 시세 5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4.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 LH마이홈(☎1600-1004)

## I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3.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4. 문의 LH(☎1600-1004)

## I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3.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4. 문의 LH(☎1600-1004)

## I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1.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2.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LH에 신청
4. 문의 LH(☎1600-1004)



# 01 주택임대지원

## I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1. 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2. 내용
  - 공공임대주택 지원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 임대의 분양 우선순위 부여,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공급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임대보증금을 국비로 지원, 저렴한 월세 주거(12개 시도\* 운영 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3. 방법
  - 공공임대주택 : LH 누리집 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 기관추천의 경우 거주지 시도청 여성가족과 등 한부모담당 부서에 문의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운영 기관에 신청
4. 문의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
  - 공동생활가정형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02 주거안정자금지원

### I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2.3~2.9%,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 다자녀 및 신혼부부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6,000만 원(수도권 2억 원)
-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 I 버팀목 대출 보증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 내용**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료 연 0.05~0.22%로 신용보증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02 주거안정자금지원

### I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 대상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우대형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li> <li>•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li> <li>• 희망키움통장 가입자</li> <li>•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li> <li>※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 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함</li> </ul>

2.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KEB하나·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 I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2. 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2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I 전세자금 보증

1. 대상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  
(보증료 연 0.05%~0.3%)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한국시티, KEB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 카카오은행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http://www.hf.go.kr))



## 03 주거환경개선지원

### I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만 9,956원)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 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원(3년)	702만 원(5년)	1,026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4. 문의
  - LH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I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 1. 대상** 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 2. 내용**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가구  
당 21만 7,000원(상당) 지원
- 3. 방법** 수혜대상자가 방문 및 전화 신청(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4.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I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2.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  
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 3. 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 4.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523)



## 03 주거환경개선지원

### I 에너지바우처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1954.12.31 이전 출생자	등록장애인	2014.1.1 이후 출생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지원제외

- ① 보장시설 수급자
-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③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 연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 연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 연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2.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여름 바우처	5,000원	8,000원	1만 1,500원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8만 6,000원	12만 원	14만 5,000원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 택1) -국민 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지원 금액	9만 1,000원	12만 8,000원	15만 6,500원	-총 지원 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 아님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5월~9월)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발급·배송(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여름 바우처 7월~9월, 겨울 바우처 10월~차년도 4월) ⇨ 정산(전담기관)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I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 1.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 2.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자주 하는 질문

-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서도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3% 절감 효과 (283kWh/m<sup>2</sup> ⇨ 217kWh/m<sup>2</sup>)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곰팡이 제거 및 공기정화 : 탈취와 항균 효과가 있는 탄화코르크를 활용해 곰팡이가 심한 가구는 벽면 시공을, 경미한 가구는 탄화코르크 액자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3. 양육·돌봄·교육 지원

01 임신·출산지원	87
02 돌봄지원	91
03 교육지원	105



# 01 임신·출산지원

## I 임신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1.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2.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3. 방법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I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1. 대상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
2. 내용
  -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통합신청
  - 양육수당,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전국 공통서비스 4종 및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개별 서비스 (지자체 개별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다름)
3. 방법 출생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4.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2-2100-4068)



# 01 임신·출산지원

## I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60만 원(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지원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I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

### 알려드립니다

#### •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내용** 임신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6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부 100만 원)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 임신 중 신청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
  - ※ 출산(유산) 후 신청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출산(유산)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
  -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3.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가능 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4.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nhis.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I 요양비(출산비) 지원

1.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2.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3.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01 임신·출산지원

## I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여성장애인

내용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0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02 돌봄지원

### I 만 0~2세 보육료 지원

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45만 4,000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어린이집 (보육료)	종일반	45만 4,000원	40만 원	33만 1,000원
	맞춤반	35만 4,000원	31만 1,000원	25만 8,000원

-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 불가
- ※ 어린이집(보육료)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유아학비)에 입소하는 경우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 ※ 2016년 7월 만 0~2세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라 종일반(7:30~19:30), 맞춤반 (9:00~15:00) 구분
- ※ 0~2세 맞춤반 아동은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제공(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 사용 가능)

3. 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 자주 하는 질문

- 보육서비스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02 돌봄지원

### I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 내용**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 카드로 지원
- 방법**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15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I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5년 1월 1일~2016년 2월 29일
- ※ 취학대상 아동(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 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분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6만원		22만원
보육료(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5만원		7만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19년 기준)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 02 돌봄지원

### I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46만 2,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자주 하는 질문

-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 I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장애아동
- 내용**
  - 보육료 월 10만 원(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 지급
  -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3만 2,000원) 지급
-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I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맞춤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2. 내용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3. 방법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 야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 02 돌봄지원

### I 가정양육수당 지원

-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 ~ 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36~47개월	12만 9,000원
				47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 I 시간제 보육 지원

1. 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2. 내용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이용시간 :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월 80시간까지 지원
  -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1,000원
3. 방법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아이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 (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
4. 문의
  -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 I 육아종합지원센터

1. 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2. 내용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일시보육 서비스,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 교재 및 교구대여, 부모 간 육아정보 교류 등 지원
3. 방법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4. 문의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 central.childcare.go.kr)





## 02 돌봄지원

### I 다함께 돌봄 사업

-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이하 아동
- 내용** 상시·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료(프로그램 운영비, 간식비 등) 10만 원 이내 본인부담
-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문의 / 시군구 다함께돌봄센터 신청

### I 아이돌봄서비스

-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종합형	일반형	생후 3개월 ~만12세 이하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 (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및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노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3. 방법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 자주 하는 질문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I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1. 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2. 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 환경·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3. 방법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드림스타트(www.dreamstart.go.kr)



## 02 돌봄지원

### I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li> <li>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li> </ul>
학용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 4,100원 지급</li> </ul>
생활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li> </ul>

3.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상담(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 I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조)부모 및 자녀]
2. 내용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 제공,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3. 방법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4.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 지역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 I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중증 월 62만 7,000원, 경증 월 55만 1,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I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18만 259원, 지역 18만 7,654원)  
이하 가구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 (돌봄서비스  
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60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02 돌봄지원

### I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기저귀) 구입비 지원사업

- 1. 대상** 상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 5세~만 34세 이하(신청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장애인으로 자격 기준」 내 대상자  
※ 타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의 신청제외 (중복지원불가)
- 2. 내용** 일회용품(기저귀 및 패드) 구입비의 월 50% 지원 (최대 월 5만원 한도)
- 3. 방법**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방문
  - ① 최종증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1부.
  - ②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
  - ③ 검사결과서(수정바델지수-MBI,K-MBI/일상생활동작지수-FMI중 택1)가 첨부된 의사진단서 1부(2019.03.01.이후 발급서류)
  - ④ 복지카드사본 (앞, 뒷면) 1부 / 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 ⑤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10일전에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
  - ⑥ 통장사본 1부(등본상 가족관계 증빙이 안 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4.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수행기관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070-4242-5997, 5998, together-seoul.org)



알려드립니다

• 2019년 최종증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수행기관(접수처)

번호	지역구	기관명	연락처
1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	02-560-4230
2	강동구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02-440-5854
3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02-989-4214
4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02-2662-3491~4
5	관악구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070-7038-3017
6	광진구	정립회관	070-7435-8222
7	구로구	성프란치스코 장애인종합복지관	070-4423-6111
8	금천구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02-6912-8022
9	노원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070-4258-7247
10	도봉구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02-6952-1746
11	동대문구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70-4522-4760
12	마포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070-7458-3210
13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53
14	서초구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070-7209-2901
15	성동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02-2290-3115
16	성북구	성북장애인복지관	070-4677-5707
17	송파구	송파구방이복지관	070-4657-2170
18	양천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070-4804-6033
19	영등포구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070-4757-7112
20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070-4657-2011
21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070-7113-5752
22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	02-6395-7073
23	중구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02-2235-6432
24	중랑구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02-438-2767
25	동작구, 기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070-4242-5998





## 02 돌봄지원

### I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람서비스

-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증장애인
- 내용**
  - 독거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가정 내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설치
  -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리고 119에 신고
-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I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제공

- 대상**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써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생활하기 희망하는 사람
- 내용**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 통합안내 및 통합 제공기반을 갖추어 안전하고 활기찬 지역생활을 지원
  - ※ 각 지자체별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방문건강관리, 돌봄, 요양, 주거 및 식사이동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방법** 신청기관 : 5개 선도 지자체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등
  - ※ 지역에 맞는 서비스 발굴과 제공모델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5개 선도 지자체에서 서비스 우선 제공('19.6~), 추후 확대 실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03 교육지원

### I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 가구의 자녀
2. 내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만 2,000원	7만 1,000원	-	-
중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	-
고등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으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 초·중·고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03 교육지원

### I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 대상**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내용**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 방법** 재학 중인 학교 및 교육청에 신청
- 문의** 소속 학교

### I 초등돌봄교실

- 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 학교 여건 및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
- 내용**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급·간식 지원
 

<b>단체활동 프로그램</b>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예·체능,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제공 ※ 음악줄넘기, 북아트, 전래놀이, 생활체육, 창의로봇, 악기연주 등
<b>개인활동 프로그램</b>	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활동, 휴식 등
<b>급·간식</b>	학생의 영양과 수요를 고려한 안전한 급·간식 제공

  
 ※ 급·간식비 및 일부 프로그램에는 수익자 부담(교육비지원 학생은 전액 무상 지원)
- 방법** 가정통신문 또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신청
- 문의**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 I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1. 대상**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학년~중등3학년)
- 2. 내용** 학습지원, 캠프, 상담, 다양한 전문체험활동 프로그램(예술, 과학, 진로개발, 봉사, 리더십개발, 동아리활동 등) 운영  
※ 주 5일, 1일 4시간 이상(석식 포함) 상시 운영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별 방과후아카데미 방문 및 유선 신청
- 4. 문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31~34, www.youth.go.kr)

## I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 2. 내용**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03 교육지원

### I 지역아동센터 지원

- 대상**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61만 3,536원) 이하]
- 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필수시간 포함) 상시운영
- 방법**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로 돌봄서비스 신청 ⇨ (시군구)접수/돌봄필요여부 등 자격확인/서비스 제공 결정 ⇨ (지역아동센터)서비스 제공 ⇨ (시군구) 사후관리 또는 확인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I 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 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만 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지원) 지원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I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2인 기준 151만 1,395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내용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I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꿈사다리 장학제도)

1. 대상 저소득 가정의 중학교 1학년(중2 진학 예정)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2. 내용 중2부터 고3까지 5년간 월 30만 원 내외의 장학금과 교육캠프, 멘토링 등 지원
3. 방법 학교에 신청하면 학교장 추천 및 선발을 거쳐 대상자 확정
4. 문의 소속 학교

### 자주 하는 질문

- 이미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어도 꿈사다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타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은 반드시 제외됩니다. 단, 신청일 이전에 일회성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학생은 포함하되 꿈사다리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계속적 장학금 수혜가 금지됩니다.







## 03 교육지원

### I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대상** 저소득 가정의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내용** 매월 장학금(30만 원~4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컨설팅(고2)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 방법**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에 대해 서류 심사 및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소속학교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등록 및 서류 제출
- 문의** 소속 학교 /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 I 고교학비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 I 급식비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 내용**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 I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2. 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 e러닝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 제공
3.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사이트명	지원 내용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등 특수교육 관련 자료 제공</li> <li>• 일반교사 및 학생 등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자료 및 동영상 제공</li> </ul>
이압 blind.nise.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EBS 방송강의, 점역 등 대체자료 제공</li> </ul>

4.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 I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 우선지원  
※ 필요시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증장애(4~6급)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도우미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전문도우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원격도우미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속기지원

※ 대학에서 도우미를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3.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922, 9923)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 03 교육지원

### I 국가장학금 [ I, II 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

####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II유형	II 유형에 참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교 자체 기준으로 선발)
다자녀장학금 (세자녀 이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셋 이상) 가구의 모든 대학생(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I 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은 성적(B0) 및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충족 필요

※ 단, 기초·차상위계층은 C0 이상 적용, 소득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대학생은 성적기준 없음

#### 2. 내용

- I 유형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구간별로 차등지원

〈2019년 소득 구간별 연간 지급금액〉

(단위 : 만원)

소득구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지급액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 II 유형 :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
- 다자녀(세자녀 이상)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 지원(단, 기초~3구간은 연간 520만 원 지원)

#### 3. 방법

한국장학재단(☎1599-2000)문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알려드립니다

##### • 소득구간이란?

- 소득수준별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해 신청학생 가구의 재산, 소득 등을 조사해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10개의 구간(1~10구간)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 I 평생교육 바우처

1.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4인 기준 295만 2,663원)인 가구의 구성원

2. 내용 지원인원 5,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 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단,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사용가능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취득교육(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등)</li> <li>• 학력취득 목적 외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매치업, 지자체 평생학습관 및 대학평생교육원 교육 등)</li> </ul>
사용가능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평생교육기관</li> <li>• 학점은행 평가인정과정 운영 기관</li> <li>•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과정 운영기관</li> </ul>

3.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해 신청·접수 절차를 도움 받을 수 있음

4.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00-3005)

### 알려드립니다

####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이란?

-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게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 평생교육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습자는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 재료비를 포함한 그 외의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35만 원)을 초과하는 수강료 금액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03 교육지원

### I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I 장애인 정보화교육

1. 대상 등록 장애인

유형	지원내용
집합교육	전국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등 정보활동 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 (교재, 교육비 전액 무료)
방문교육	정보화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교육 실시
IT긴급지원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3. 방법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상담실(☎1588-2670) 전화 신청
  - 국민정보화교육 누리집([www.itstudy.or.kr](http://www.itstudy.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I 온라인 정보화 교육

1. 대상 전 국민
2. 내용
  - '배움나라([www.estudy.or.kr](http://www.estudy.or.kr))'에서 무료 정보화교육
  - 모바일,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신기술 체험 등 ICT 활용 및 고급 과정을 무료로 제공
3. 방법 '배움나라([www.estudy.or.kr](http://www.estudy.or.kr))'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온라인 정보화교육(☎053-230-1398, [www.estudy.or.kr](http://www.estudy.or.kr))



## 4. 건강지원

01 의료비지원	116
02 건강관리지원	128
03 재활지원	131





# 01 의료비지원

## I 국가건강검진제도

###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li> <li>의료급여수급자 : 만 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시행)</li> </ul>
암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2년 1회)</li> <li>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li> <li>대장암 : 만 50세 이상의 남녀(1년 1회)</li> <li>유방암 : 만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li> <li>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li> </ul>
영유아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6세 미만의 영유아</li> <li>- 월령별로 총 7회(구강검진 3회) 검진 실시</li> </ul>
학생 건강검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 (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 (3년 주기) (2019년 기준, 2001년생~2010년생)

### 2. 내용

구분	목표질환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li> <li>• 성·연령별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성·연령별 검사항목</th> <th>실시시기</th> </tr> </thead> <tbody> <tr> <td>골밀도검사</td> <td>만 54, 66세(여성)</td> </tr> <tr> <td>인지기능장애</td> <td>만 66세 이상 2년 1회</td> </tr> <tr> <td>정신건강검사(우울증)</td> <td>만 20, 30, 40, 50, 60, 70세</td> </tr> <tr> <td>생활습관평가</td> <td>만 40, 50, 60, 70세</td> </tr> <tr> <td>노인신체기능</td> <td>만 66, 70, 80세</td> </tr> </tbody> </table>	성·연령별 검사항목	실시시기	골밀도검사	만 54, 66세(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 30, 40, 50, 60,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
성·연령별 검사항목	실시시기											
골밀도검사	만 54, 66세(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 30, 40, 50, 60,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	만 66, 70, 80세											

구분	목표질환
암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암 : 위내시경검사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li> <li>• 간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li> <li>•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단,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li> <li>• 유방암 : 유방촬영술</li> <li>•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li> </ul>
영유아 건강검진	시각이상(사시), 굴절이상(약시), 청각이상, 영양결핍(과잉), 치아발육 상태 등
학생건강검진 (교육부)	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색각이상유무,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여성가족부)	비만, 시·청각이상, 고혈압, 건강위험요소 파악 등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hi.nhis.or.kr)



## 01 의료비지원

### I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1.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27만 2,807원, 지역 29만 7,628원)이하 가정의 신생아
  - 환아관리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 이상으로 진단된 만 19세 미만 아동
- 2. 내용**
  - 선천성대사 이상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7만 원 한도 정밀검사비용을 지급하고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제공
- 3.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문의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I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 대상**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27만 2,807원, 지역 29만 7,628원)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둘째 아이 이상은 소득 관계 없이 지원)
- 2. 내용**
  - 미숙아의 입원치료비를 체중별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3.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문의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I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2. 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
-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I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 내용**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94개 질환) 지원
  - 보장구 구입비(대상질환 91개), 간병비(월 30만 원, 대상질환 95개)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만 19세 이상, 7개 질환)에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 원 이내 및 저단백 햇반 연간 168만 원 이내)
  -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nih.go.kr)

## I 장애검사비 지원

- 대상**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내용**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5만 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 원 지급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 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 원 지급
- 방법** 장애검사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01 의료비지원

## I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2.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3.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 I 건강보험제도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li> <li>•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li> </ul>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6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2019.1.1.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 2019.1.1. 전 신청자는 50만 원(다태아 90만 원) 지원 (다태아 10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신부 20만 원 추가 지급)
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일부 지급

3.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01 의료비지원

## I 건강보험 산정특례

1.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내용

구분	특례기간	본인 부담률
암	5년	5%
뇌혈관질환	최대 30일(입원)	5%
심장질환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5%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10%
중증난치질환	5년	10%
결핵	결핵치료기간	0%
중증화상	1년(6개월 연장)	5%
중증외상	최대 30일(입원)	5%
중증치매	V800 : 5년 / V810 : 5년 (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10%

3. 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I 건강보험 차상위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지원내용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I 재난적 의료비 지원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4인 기준 직장가입자 15만 5,120원, 지역가입자 15만 6,960원)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이상인 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발생액이 10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200만 원 초과 시 지원

2. 내용 입원진료비 및 중증질환\*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로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희성질환

3.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사에 신청



# 01 의료비지원

## I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상세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건강보험료 책정 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 적용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이 360만 원 이하 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등급 1~2급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 : 1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등록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1577-1000)

## I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구분	대상자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당연 적용(사유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환자·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신청에 의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	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기타 중증질환자(일정기한 내)

2. 내용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3.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 I 의료급여 제도

###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지원내용	상세내용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li> <li>•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li> <li>-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마다</li> <li>-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70세</li> <li>-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li> <li>-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li> </ul> </li> </ul>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6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
장애인 보장구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지급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3. 방법 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01 의료비지원

## I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제 2차 또는 제 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 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I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 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 내용**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구분	본인부담금 보상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지급금 지원
1종수급자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2종수급자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 초과 금액)	입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1만 원 초과 시 보장기관이 인정한 금액

\*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 (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및 신청(유선, 우편, FAX 등)



## I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2. 내용
  - 매월 6,000원(7만 2,000원/연)씩 지원
  -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3. 방법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I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1. 대상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등  
\*질환군별 연간 365일
2. 내용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자주 하는 질문

-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
- ②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폐업한 경우
- 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함)







## 02 건강관리지원

### I 영양플러스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69만 829원) 이하 가구 중 영양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I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2인 기준 직장 9만 4,808원, 지역 7만 5,719원)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I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1. 대상**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2. 내용**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지원
  -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 ※ 현재 전국 3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년차별 확대(19개소) 예정
- 3. 문의**
  - 서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서울 보라매병원 ☎02-870-2071)
  - 대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충남대학교병원 ☎042-333-2229)
  - 경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4134)

## I 장애친화 건강검진

- 1. 대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 2. 내용**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 현재 전국 8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년차별 확대(100여개소) 예정
- 3. 방법**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건강검진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아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방문하여 검진
  -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서울] 서울의료원, [대전] 대청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강원] 원주의료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남] 마산의료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중앙병원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02 건강관리지원

### I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지원 등)
  - 정신질환자 대상 투약·치료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3. 방법
  -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 자주 하는 질문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야간 및 주말, 휴일은 지정된 관할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3 재활지원

### I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 대상 지속적인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2. 내용 조기적응 프로그램, 재활운동 프로그램,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프로그램 등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보건소

### I 발달재활 서비스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27만 2,807원, 지역 29만 7,628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2. 내용
  -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3.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03 재활지원

### I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1.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2.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지원
3.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등을 제시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I 언어발달 지원

1.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18만 259원, 지역 18만 7,654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2.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3.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알려드립니다

-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 I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 문의** 교육부(☎044-203-6560)

## I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시각·청각 장애인
- 내용** 2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구분	지원내용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청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청취증폭기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근육병증 등) 단, 보행용보조기구 및 목욕의자는 1~4급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식사보조기구,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 검토(시군구청) ⇨ 교부 결정
- 문의** 장애인보조기구센터(☎1670-5529)





## 03 재활지원

### I 장애인 보장구 급여

1.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li> <li>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li> </ul>
의료급여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li> </ul>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3.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운행 전〉

- 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 ②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 ③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연소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운행 중〉

- ④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⑤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⑥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의 경사로 이용을 자제한다.
- ⑦ 차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 ⑧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
- ⑨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 야간 조명등 및 형광표식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 ⑩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5. 취업지원

01 취업훈련·알선지원	136
02 창업지원	145



# 01 취업훈련·알선지원

## I 취업성공패키지

1. 대상 I 유형(중위소득층/취약계층)과 II 유형(청년층/중·장년층)으로 구분

I 유형	I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69세 대상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24세 대상)</li> <li>중위소득층 : 중위소득 60%(4인 기준 276만 8,122원) 이하 가구 구성원</li> <li>취업취약층 :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노숙인,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층 :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비진학 학생 참여 가능</li> <li>중·장년층 : 만 35~69세 이하로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61만 3,536원) 이하 가구구성원</li> </ul>

2. 내용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1단계) 진단, 의욕제고 및 취업활동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li> <li>- I 유형 : 15~25만 원 지급</li> <li>- II 유형 : 15~20만 원 지급</li> </ul>
(2단계) 취업능력과 직장 적응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00만~300만 원의 훈련비 지원(I 유형 : 최대 10% 자부담, II 유형 : 5~50% 자부담)</li> <li>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출석일수의 80%를 수강한 사람에 대해 1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만 8,000원(월 최대 28만 4,000원)의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li> </ul>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5~64세 이하의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매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급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li> <li>I 유형 참여자가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30만 원, 6개월 근속 시 40만 원, 12개월 근속 시 8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li> </ul>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 선정결과 통지 ⇨ 프로그램 참여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I 내일배움카드제

-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 난민인정자, 농·어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
- 내용** 실업자(자영업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li> <li>• 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 장려금 지급</li> </ul>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II 유형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30~95% 지원
	I 유형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국가기간·전락산업직종 훈련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잔액이 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해 훈련비 전액 지원</li> <li>•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li> </ul>

- 방법**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계좌발급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알려드립니다

-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훈련 적합성 및 지원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업능력개발 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지원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단위기간(1개월)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훈련수강 중 취·창업을 한 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



# 01 취업훈련 · 알선지원

## I 자활근로

- 대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 내용**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알려드립니다

#### • 자활근로사업단이란?

-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 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I 공공산림가꾸기

- 대상**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b>신청자격 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li> <li>• 고교·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li> </ul>
<b>우대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취약계층 및 만 55세 이상 장년층, 만 18~34세의 청년층 우대</li> </ul>
<b>참여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3년간 2년 이상 참여자</li> <li>• 고소득자(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재산액 2억 원 이상)</li> </ul>
- 내용**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6만 6,800원~7만 4,800원(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 월 근무시간 : 160시간 / 근무기간 : 약 10개월
- 방법**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및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 문의** 시군구 산림부서 및 국유림 관리소 / 산림청(☎1588-3249)

### 알려드립니다

####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종류는?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공공성이 강한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사업 DB 구축 등
- 숲가꾸기패트롤 :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 및 산림내 현장민원 처리



## I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 1.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3.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saeil.mogef.go.kr)

### 알려드립니다

#### •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씩을 인턴채 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기업 60만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 I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 1. 대상** 만 18세 ~ 6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2. 내용**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 등을 지원
- 3.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 시군구청에 신청





# 01 취업훈련 · 알선지원

## I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1. 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의 구직 장애인(중증 및 여성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 우선)
2. 내용 공단에서 지원하는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참여
  - ※ 민간위탁훈련기관 훈련생에게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해 월 4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조건)
3.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훈련 : 수시 신청
  - 한국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의 훈련 : 별도의 모집기간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자주 하는 질문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공단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한 후에 2단계 민간훈련기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무엇인가요?
  -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취업계획 수립(1단계),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훈련(2단계), 취업알선(3단계)의 각 단계마다 참여(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I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장애인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2.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청각장애인훈련센터(2개소), 맞춤형훈련센터(6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5개소)

구분	훈련비 지원율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 원 지급
식비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민간기관 훈련생에게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 6,000원 지급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은 수시 입학 지원

※ 직업능력개발원의 정규훈련, 청각·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함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01 취업훈련 · 알선지원

## I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구분	내용	실시기관	훈련수당
직업적응 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훈련, 작업환경적응 및 직업능력 향상 훈련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 월 10만 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과 연계가 가능한 기술 훈련(안마수련, 바리스타, 정보처리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	• 훈련준비금 1회 4만 원 • 훈련수당 월 20만 원 • 자격취득수당 1회 5만 원

3. 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70-5089-5145)

## I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1.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2. 내용
  -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7,000원, 숙박비 1박 1만 원 지급, 재해보험 가입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1588-1519, www.kead.or.kr)

## I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미취업 등록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174만 5,150원 12월 : 163만 6,000원
	시간제			일 4시간 주 5일	87만 2,580원 12월 : 82만 6,650원
복지 일자리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주 14시간 월 56시간	46만 7,600원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일 5시간 주 25시간	111만 3,740원 12월 : 104만 5,500원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일 5시간 주 25시간	109만 3,850원 12월 : 102만 7,050원

3. 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01 취업훈련 · 알선지원

### I 근로 지원인 지원

- 1. 대상** 업무 수행 능력은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2. 내용**
  -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로 지원인 서비스 제공  
(장애인 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
  - 근로 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 장애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 3. 방법**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실 이용
-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http://www.kead.or.kr))

### I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 1. 대상** 사업별로 상이하며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 2. 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 3. 방법**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 4. 문의** 워크넷([www.work.go.kr](http://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02 창업지원

### I 장애인 창업육성

1.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 제공

창업기초교육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본자세 교육
업종특화교육	특정 창업 유망업종에 대한 업종 심화지식 함양
역량강화교육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역량 제고
재기교육(신설)	센터 지원으로 창업 후 실패한 대상 재기 지원

• 수료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 보육실 입주 등 연계

창업점포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점포 보증금 지원
보육실입주지원	창업을 했거나 희망하는 장애인기업의 보육실 입주지원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최대 1,000만 원(청년 창업자 2,000만 원)이내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3. 방법 교육수행기관 모집·심사 ⇨ 수행기관 및 교육과목 확정 ⇨ 교육실 ⇨ 창업지원 연계(점포·보육실 입주지원)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 02 창업지원

### I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1.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내용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 입주비용 : 수도권-보증금 10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지역센터-보증금 5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 장애인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 I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창업점포의 전세보증금 관련 비용을 포함해 총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 최초 3년 계약이 원칙, 3년 종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추가 2년 지원
  - ※ 최초 계약기간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해 대상자 부담
3. 방법 창업점포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층면접 심사 ⇨ 협약 ⇨ 점포 개발 컨설팅 ⇨ 창업점포 선정평가 ⇨ 사후관리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 3장. 시설안내

---

·이용시설	151
·생활시설	157
·직업시설	161
·재활병원	163
·교육기관	167



## 1. 이용시설

장애인복지관	151
보조기기센터	152
자립생활센터	153
주거복지센터	15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55



# 01 이용시설

## I 장애인복지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문 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내 회원기관 참조 (www.hinet.or.kr)

· 뇌성마비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장애인복지관 (서울시)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강남구	강남장애인복지관	02-445-8006	종합
2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	02-451-6000	종합
3	강남구	성모자애복지관	02-3411-9581	종합
4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02-440-5700	종합
5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02-989-4214~8	종합
6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02-2662-3491~4	뇌성마비
7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02-3665-3831	종합
8	관악구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02-877-0750	종합
9	광진구	정립회관	02-446-1237	지체
10	구로구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02-2611-1711	종합
11	구로구	성프란치스코장애인종합복지관	02-830-6500	종합
12	금천구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02-6912-8000	종합
13	노원구	성민복지관	02-931-7970	종합
14	노원구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02-935-6375~6	지체
15	노원구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2092-1700	종합
16	노원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02-932-4412	뇌성마비
17	도봉구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02-6952-1777	종합
18	동대문구	동문장애인복지관	02-2244-3100	종합
19	동대문구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927-0063	종합
20	동작구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829-7100	종합
21	마포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02-306-6212	종합
22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00	종합
23	서초구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02-2055-0909	종합
24	성동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02-2290-3100	종합
25	성북구	성북장애인복지관	02-915-9200	종합
26	송파구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02-431-8881	종합
27	송파구	송파구방이복지관	02-3432-0477	지체
28	양천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02-2061-2500	종합
29	영등포구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02-3667-7979	종합
30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02-707-1970	종합
31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351-3982	종합
32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	02-6395-7070	종합
33	중구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02-2235-8630	종합
34	충랑구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02-438-2691	종합





# 01 이용시설

## | 보조기기센터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의 자립생활 영위와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절한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

· 전국보조기기센터 안내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경기도 수원	경기도재활공학 서비스연구지원센터	031-295-7363
2	경기도 의정부	경기도 북부보조기기센터	031-852-7363
3	경남 창원	경상남도보조기기센터	055-237-8242 / 070-5007-1942
4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보조기기센터	062-613-9365~6
5	대구 남구	대구광역시보조기기센터	053-650-8340~3
6	대전 중구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	042-388-2980~2
7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1670-5529(내선 4) / 051-790-6192-6
8	서울 강동구	서울시 동남보조기기센터	02-440-5891~5
9	서울 강북구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내선 1)
10	서울 강서구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	02-2662-3495
11	서울 노원구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	070-4258-7439(7257,7444)
12	서울 마포구	서울시 서북보조기기센터	02-6070-9264~9
13	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032-540-8945~8
14		인천광역시자세유지기구센터	032-540-8988
15	전북 전주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063-220-3000
16	제주	제주광역시보조기기센터	064-753-9997
17	충북 청주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070-7209-3260~2 / 070-7209-3141

## | 자립생활센터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권익옹호, 정보제공,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이동지원서비스, 탈시설 자립지원

문 의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내 회원기관 참조 ([www.koil.kr](http://www.koil.kr))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9-3766
2	강남구	Good Job자립생활센터	02-518-2197
3	강동구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42-9664
4	강동구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85-0546
5	강북구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80-5292
6	강북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08-7776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가이드북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7	강서구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05-0420
8	강서구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664-0874
9	강서구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064-0896
10	강서구	강서길라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662-0946
11	강서구	꿈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91-2692
12	관악구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77-0293
13	관악구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78-2031
14	광진구	으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44-4399
15	광진구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348-8915
16	광진구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437-2092
17	구로구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57-9501
18	구로구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16-3391
19	금천구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4035-4340
20	노원구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	02-930-8212
21	도봉구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5-2887
22	동대문구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59-5603
23	동작구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12-2536
24	마포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37-6150
25	서대문구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센터	02-720-6698
26	서초구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088-3119
27	성동구	성동노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296-0551
28	성동구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214-3525
29	성북구	성북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17-6150
30	송파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04-0920
31	양천구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08-2979
32	양천구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97-0420
33	영등포구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86-8482
34	영등포구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081-5900
35	용산구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02-716-0302
36	은평구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54-1724
37	은평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74-0817~8
38	종로구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22-9921
39	종로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66-9106
40	중구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252-9050
41	중랑구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207-1072



# 01 이용시설

## I 주거복지센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대상 |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시민

- 지원내용 |
- SH서울주택도시공사 :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상담 및 교육, 주거상향 설계 서비스, 주거관련정책 및 제도 안내, 공구대여(센터별 상이),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소액보증금, 연체임대료, 연료비), 간편집수리 (센터별 상이), 주거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을 진행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분양 임대주택, 토지, 상가, 임대차관련 법률상담, 하자 접수 및 상담, 주거급여 등 모든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문의 | 콜센터 ☎1600-3456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콜센터 ☎1600-1004 및 마이홈(www.myhome.go.kr), LH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 • SH서울주택도시공사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주거복지센터	070-5008-9216
2	강동구	강동주거복지센터	02-6933-6870
3	강북구	강북주거복지센터	02-980-4808
4	강서구	강서주거복지센터	02-2661-0896
5	관악구	관악주거복지센터	02-875-3197
6	광진구	광진주거복지센터	02-2138-8373
7	구로구	구로주거복지센터	02-853-9275
8	금천구	금천주거복지센터	02-2627-8499
9	노원구	노원주거복지센터	02-930-1180
10	도봉구	도봉주거복지센터	02-6958-8081
11	동대문구	동대문주거복지센터	02-2138-1901
12	동작구	동작주거복지센터	02-816-1688
13	마포구	마포주거복지센터	02-6383-6100
14	서대문구	서대문주거복지센터	02-303-3733
15	서초	서초주거복지센터	02-6202-9000
16	성동구	성동주거복지센터	02-6933-8051
17	성북구	성북주거복지센터	02-922-5942
18	송파구	송파주거복지센터	02-400-2271
19	양천구	양천주거복지센터	02-6933-6190
20	영등포구	충양주거복지센터	02-2135-5693
21	영등포구	영등포주거복지센터	02-785-7044
22	용산구	용산주거복지센터	02-6713-5055
23	은평구	은평주거복지센터	02-388-2979
24	종로구	종로주거복지센터	02-722-8658
25	중구	중구주거복지센터	02-2138-8791
26	중랑구	중랑주거복지센터	02-3421-8961

• NH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센터)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서울남부권 마이홈센터	02-2182-2733
2	강남구	서울권 마이홈센터	02-3416-3604
3	영등포구	서울서부권 마이홈센터	02-2169-8800
4	종로구	서울중부권 마이홈센터	02-6454-2700

\* 마이홈센터는 위 4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56개소로 운영되고 있음.

## I 장애인가족지원센터(서울)

지원대상 | 장애인가족

지원내용 | 장애인 가족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의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49-3133~4 / seoul.dfsc.or.kr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412-8551
2	강서구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6-1991~2
3	광진구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456-0708
4	금천구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02-0502
5	도봉구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907-9633
6	동대문구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49-1717
7	마포구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03-3618
8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94-4430
9	서초구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597-8339
10	성동구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29-2456
11	영등포구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49-3133~4
12	은평구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57-3345~6



## 2. 생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57
장애인단기보호시설	157
장애인거주시설	158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59
자립생활주택	159





## 02 생활시설

### I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 견학 취미생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 보건복지콜센터 ☎129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연령	구분
1	강서구	햇별교실	02-2661-0673	성인	지적·뇌병변
2	강서구	강서뇌성마비주간보호센터	02-2662-3491~4	성인	뇌성마비
3	노원구	하계장애인주간활동센터	02-6928-7350	성인	지체·지적·뇌병변
4	노원구	오뚜기뇌성마비주간보호센터	02-932-4415	성인	뇌성마비
5	도봉구	지앤지주간보호센터	02-998-2855	청소년·성인	뇌병변
6	마포구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02-302-1066	청소년·성인	지체·지적·뇌병변
7	마포구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02-359-1000	성인	지적·뇌병변
8	서초구	서리풀주간이용센터	070-7209-2889	성인	뇌병변
9	성동구	성동주간보호센터	02-2290-3141	아동	지적·뇌병변
10	용산구	한벗장애인주간보호	02-713-5050	청소년·성인	뇌병변

\* 서울특별시 복지포털(<http://wis.seoul.go.kr/>)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참조

\* 시설의 운영방식에 따라 이용대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재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

신청방법 | 보건복지콜센터 ☎129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연령	구분
1	강서구	강서희망의집	02-2605-7980	성인	뇌병변
2	강서구	선원원	02-2654-3372	아동·성인	뇌병변·중증장애인
3	노원구	사랑샘단기보호소	02-932-4635	아동·청소년	등록장애인
4	마포구	한벗동지	02-336-3100	아동·성인	지체
5	서대문구	다솜센터(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보호센터)	02-372-9394	성인(여성)	전장애
6	종로구	다운누리(시립종로장애인단기거주시설)	02-440-2114	성인(여성)	지적·뇌병변





## 02 생활시설

### I 장애인거주시설 (서울 및 경기)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우, 이용료 중 매 월 28만 6,000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복지콜센터 ☎129 / 한국장애인시설협회 누리집 <http://www.kawid.or.kr>

#### · 서울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강동구	주몽재활원	070-8255-0315	아동(만5세이상)
2	강동구	암사재활원	02-441-0407	아동
3	강북구	디딤자리	02-987-6009	영유아(0~6세)
4	노원구	쉼터요양원	02-937-5057	성인(19~45세)
5	노원구	늘편한집	02-933-5228	성인(만18세이상)
6	노원구	천애재활원	02-930-4635	지체
7	성북구	승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	02-921-6410	아동(만4세~18세)
8	용산구	가브리엘의집	02-757-1511	아동·성인
9	용산구	영락에니아의집	02-754-8507	아동
10	은평구	시립평화로운집	02-3156-6500	성인남성(만18세이상)

#### · 경기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가평군	루디아의집	031-581-1215	아동·성인
2	광주시	한사랑장애영아원	031-764-1119	영유아(6개월~4세)
3	광주시	한사랑마을	031-764-2115	아동·성인
4	김포시	향유의집	031-981-0909	성인(만18세이상)
5	용인시	효정비전타운	031-323-0030	성인
6	포천시	생수의집	031-536-0585	성인(만18세이상)
7	여주시	다산하늘센터	031-885-7771	성인(만18세이상)

\* 서울특별시 복지포털(<http://wis.seoul.go.kr/>)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참조

\* 시설의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대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할,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지원내용 | 자립생활 지원, 사회적응 지원, 지역사회와의 유대 지원, 여가생활 및 직업생활 지원, 정서안정 지원
- 신청방법 |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02-756-7060(www.ghcenter.org)  
- 한국장애인시설협회누리집(www.kawid.or.kr)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구로구	오뚜기하우스 1호, 2호	070-8881-4415	성인 남성

\* 서울특별시 복지포털(<http://wis.seoul.go.kr/>)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참조

## I 자립생활주택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 또는 퇴소자
- 지원내용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
- 입주인원 : 1주택 당 2~3명 거주(1인 1실 기준)
  - 입주기간 : 최장 7년 거주(6~12월 단위로 입주 및 연장 계약)
  - 주거형태 : 아파트, 다세대/단독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 신청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1670-5755 / [www.welfare.seoul.kr](http://www.welfare.seoul.kr)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자립생활센터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Good Job자립생활센터	02-518-2197
2	강동구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85-0546
3	강북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08-7776
4	강서구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664-0874
5	구로구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57-9501
6	도봉구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5-2887
7	동대문구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59-5603
8	마포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37-6150
9	성동구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214-3525
10	송파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04-0920
11	양천구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08-2979
12	영등포구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081-5900
13	은평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74-0817~8
14	종로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66-9106
15	중구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252-9050



### 3. 직업시설

근로사업장	161
보호작업장	161



## 03 직업시설

### I 근로사업장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서울시 복지포털 wis.seoul.go.kr

• 뇌성마비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근로사업장(서울, 경기)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노원구	동천	02-974-2950
2	서대문구	그린내	02-303-4520
3	송파구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02-6913-9191
4	종로구	더해봄	02-742-0660
5	파주시	에덴하우스	031-946-7030
6	파주시	형원	070-4369-7000

### I 보호작업장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 제공  
-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서울시 복지포털 wis.seoul.go.kr

• 뇌성마비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보호작업장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관악구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02-887-3629
2	서초구	사랑의일터	02-3477-5111
3	영등포구	라피드보호작업장	02-2677-8008
4	중랑구	참좋은센터	02-491-3773
5	중랑구	원광보호작업장	02-438-2605



## 4. 재활병원

| 재활병원 163

| 장애인치과 165



## 04 재활병원

### I 재활병원

문 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병원, 약국 찾기 ([www.hira.or.kr](http://www.hira.or.kr))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안강병원	1899-3210
2	강남구	메드렉스병원	02-6011-6000
3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1599-6114
4	강남구	청담병원	02-2104-2000
5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02-3410-2114
6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1577-5800
7	강동구	주몽재활의원	070-8255-0355~7
8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1588-4110
9	강동구	리스크강동병원	02-3426-0100
10	강동구	청병원	02-2202-3114
11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02-2225-1114
12	강북구	성신병원	02-986-1313
13	강북구	대한병원	02-903-3231
14	강북구	국립재활원	02-901-1700
15	강서구	솔병원	02-2064-7575
16	강서구	서울큰나무병원	02-2695-1155
17	관악구	조인트힐병원	1899-7272
18	관악구	심정병원	1588-3330
19	관악구	연세건우병원	1644-4630
20	관악구	SRC부설의원	02-871-3636
21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1588-1533
22	광진구	제니스병원	02-3436-8888
23	광진구	해민병원	02-453-3131
24	구로구	씨티병원	02-2615-5005
25	구로구	고려수재활요양병원	02-1577-2588
26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02-2626-1114
27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02-950-1114
28	노원구	새서울연합의원	02-930-5858
29	노원구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1899-0001
30	도봉구	바로선병원	1666-5853
31	도봉구	도봉병원	02-3492-3250
32	도봉구	한일병원	02-901-3114
33	동대문구	경희의료원	02-958-8114
34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1577-3675
35	동대문구	하늘병원	1544-7588
36	동대문구	맑은수병원	02-2681-0119
37	동작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02-870-2114
38	동작구	연세바른병원	1544-8235
39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1800-1114
40	마포구	푸르메재단 벅슨어린이재활병원	02-6070-9000





## 04 재활병원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41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1599-1004
42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588-1511
43	서초구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02-570-8000
44	서초구	강남 연세사랑병원	1577-0050
45	성동구	성동재활의원	02-2204-9970
46	성동구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02-2290-8114
47	성동구	제인병원	02-3408-2100
48	성북구	서울척병원	1599-0033
49	성북구	우신향병원	02-926-7505
50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1577-0083
51	성북구	성북중앙병원	02-919-3404
52	송파구	국립경찰병원	02-3400-1114
53	송파구	서울초이스병원	02-508-2700
54	송파구	선수촌병원	1661-3379
55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1688-7575
56	양천구	라운휴병원	02-2601-2611
57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1566-6688
58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02-2650-5114
59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1661-7575
60	영등포구	명지춘혜병원	02-3284-7777
61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1899-1475
62	영등포구	성애병원	02-840-7114
63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02-2639-5114
64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02-709-9114
65	용산구	금강아산병원	02-799-5000
66	은평구	서울재활병원	02-6020-3000
67	은평구	서울특별시서북병원	02-3156-3000
68	은평구	서울특별시은평병원	02-300-8114
69	은평구	연세노블병원	02-384-0009
70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1588-5700
71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1599-8114
72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000
73	종로구	로이병원	1644-7541
74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114
75	중랑구	프라임병원	02-975-7500
76	중랑구	라본병원	02-2209-6677
77	중랑구	녹색병원	02-490-2000
78	중랑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02-2276-7000
79	중랑구	서울특별시북부병원	02-2036-0200

## I 장애인치과

문 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병원, 약국 찾기 (www.hira.or.kr)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내 치과	02-2662-3491~4
2	노원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내 치과	02-932-4412
3	마포구	푸르메백손어린이재활병원 통합치과진료센터	02-6070-9171
4	성동구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02-2282-0001, 0012
5	영등포구	더스마일치과의원	02-6925-4815
6	종로구	푸르메치과의원	02-6395-7020



## 5. 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167
장애전담 어린이집	167
특수학교	168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168



## 05 교육기관

### I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대상 | 특수교육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장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대하여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 및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

신청방법 | 서울시 특수교육지원센터 ☎ 02-3999-598, 624, 027 / <http://www.sen.go.kr/sedu>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관할 행정구
1	강남구	강남서초특수교육지원센터	02-459-1013	강남구, 서초구
2	강서구	강서양천특수교육지원센터	02-3665-0806~7	강서구, 양천구
3	구로구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본원)	02-861~3-2416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4	노원구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02-956-1040	노원구, 도봉구
5	동작구	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	02-833-2895	동작구, 관악구
6	성동구	성동광진특수교육지원센터	02-2292-6411	성동구, 광진구
7	성북구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02-911-1078	강북구, 성북구
8	송파구	강동송파특수교육지원센터	02-414-2634	강동구, 송파구
9	영등포구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분원)	02-2038-2700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10	은평구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02-715-0953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1	중구	중부특수교육지원센터	02-2278-6587~8	종로구, 중구, 용산구
12	중랑구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02-433-4327	동대문구, 중랑구

### I 장애전담어린이집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강북구	까리타스어린이집	02-996-1556	법인.단체등
2	구로구	아나물장애아어린이집	02-852-1628	국공립
3	구로구	에덴장애아어린이집	02-2625-9403	법인.단체등
4	노원구	초록어린이집	02-951-6118	국공립
5	도봉구	두발로어린이집	02-999-2855	법인
6	도봉구	해바라기어린이집	02-999-0691	민간
7	마포구	우리마포어린이집	02-702-3100	국공립
8	양천구	구립 신목장애아어린이집	02-2643-6554	국공립
9	양천구	서울베다니어린이집	02-2605-9237	민간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https://iseoul.seoul.go.kr>)



## 05 교육기관

### | 특수학교

번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동구	주몽학교	070-8255-0505
2	관악구	서울새롬학교	02-840-3535
3	구로구	서울정진학교	02-2688-1303
4	노원구	서울정민학교	02-978-8405
5	마포구	한국우진학교	02-304-6255
6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재활학교	02-2123-8141

###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 학교알리미 누리집([www.schoolinfo.go.kr](http://www.schoolinfo.go.kr))검색

: 우측 하단 '지도검색' 클릭 → 해당지역클릭 → 시/군/구 선택하여 초·중·고등학교검색

→ 우측 상단 '상세정보' 클릭 → '학생현황' 내 '학교현황' 클릭 → 특수학급 확인

## ※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w.go.kr>)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 누리집(<http://disability.seoul.go.kr>)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http://www.welfare.seoul.kr>)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http://knat.go.kr>)

서울시보조기기센터 누리집(<http://www.seoulats.or.kr>)

서울특별시 교육청 누리집(<http://sen.go.kr>)

강서구청 누리집(<http://www.gangseo.seoul.kr>)

강서양천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http://www.sen.go.kr/sedu/gangseo/index.do>)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누리집(<http://www.koil.kr>)

보건복지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복지사업안내」

한국관광공사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http://korean.visitkorea.or.kr))

군자출판사(2013) 「뇌성마비」

군자출판사(2016) 「알기 쉬운 뇌성마비」

시그마프레스(2012) 「신경언어장애」





##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가이드북

1판 1쇄 발행	2014년 12월 31일
2판 1쇄 발행	2015년 08월 31일
3판 1쇄 발행	2016년 11월 30일
4판 1쇄 발행	2017년 12월 20일
5판 1쇄 발행	2019년 08월 30일

발행처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발행인	박세영
편집인	박선희 장고은 이수민
주소	(07517)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45길 69
전화	02-2662-3491~4
팩스	02-2662-2700
홈페이지	<a href="http://www.grccp.or.kr">www.grccp.or.kr</a>
디자인	디노바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가이드북**